####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-281호

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7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#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# 1. 개정이유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(법률 제19258호, 2023. 3. 21. 공포, 9. 22. 시행)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농어민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 변경(안 제2조)

- 現 시행령의 일반·저소득 가입기준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정(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 등)
- ※ 부칙으로 기존 농어민에 대한 특례 마련

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(은행과)
  - 일반우편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  - 전자우편 : imlee1012@korea.kr
  - 전화 : (02) 2100 2982
  - 팩스 : (02) 2100 2948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정책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